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4. 25.(월)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조항 삭제(안 제3조)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

종 전		개 정
조례로 재산세 50% 범위내 감면율을 정함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재산세 50% 감면율 명시

나. 관련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제3호)

-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상위법 변경
(수산가공품 전문 판매점)

종 전		개 정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가공품 전문 판매점”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판매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세 정 과

라. 입법예고 : 2022. 2. 18. ~ 3. 10.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위법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제3호의 근거 법률인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2020년 2월 18일)됨에 따른 법률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 시세 감면 조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조항 삭제 및 조문 현행화)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단순 조문 정비에 해당)

4. 작성자

산업경제국 세정과장 유회근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개정 전>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시행일 2019.1.1]]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개정 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시행일 2022.1.1]]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

정 2013.1.1, 2014.1.1, 2020.12.29]
③ 삭제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시행일 2022.1.1]]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조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 2015.05.14 조례 제1251호

(중략)

(일부개정) 2021.05.13 조례 제18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5. 14., 개정 2021. 5. 1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③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28., 2020. 5. 14., 2021. 5. 13.>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

다.[전문개정 2019. 6. 27.]

제4조(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13.>
[전문개정 2018. 9. 2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1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전문개정 2018. 9. 20.]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1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6. 27.]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

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13.>[전문개정 2018. 9. 20.]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17. 9.28.>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9.28., 2018. 9. 20., 2019. 6. 27., 2021. 5. 13.>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8. 9. 20., 2019. 6. 2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9. 20.]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21. 5. 13.>]

제3장 보칙

제12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21. 5. 13.>]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2021. 5. 13.>]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2021. 5. 13.>]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남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2021. 5. 13.>]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2019. 6. 27.>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제9조에 따른 감면

[종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2021. 5. 13.>]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니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2021. 5. 13.>]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2021. 5. 13.>]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종전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2021. 5. 13.>]

부 칙 <조례 제1834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